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12. 4. 29. 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



'12. 4. 29. 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 21 조 ~ 제 24 조

1 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간 20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특히 건축자재로 사용 되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건축물 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면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대상입니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뒷면 참고)
2. 「영유아보육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m²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문화 및 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 m² 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09.1.1. 이후 「건축법」 제 21 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MINISTRY OF
ENVIRONMENT**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대상에 들어간다면?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12. 4. 28 이전부터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 ❶ 1999. 12.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2년 (2014. 4. 28 까지) 이내
- ❷ 그 외 해당 건축물은 3년 (2015. 4. 28 까지) 이내

2. '12. 4. 29 이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건축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 대상에 해당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조사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고 → "석면조사기관" 검색)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고 나면?

1.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

→ 석면종합정보망 (asbestos.mel.go.kr)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2.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 석면건축자재 위험성 평가,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관할 지자체로 제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약 45,000 개 이상의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상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 이후에는 건축물 석면조사 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석면조사기관을 적기에 찾지 못해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원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금년 중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 · 대합실 ·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연면적 2,000 m² 이상 (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m² 이상인 경우 포함) 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떨린 지하층 시설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m² 이상)
-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m² 이상)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 m² 이상)
-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연면적 3,000 m²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m² 이상)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연면적 2,000 m²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 개 이상)
-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m² 이상 ,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m² 이상)
- 「영유아보육법」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 m²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노인복지법」제 34 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000 m² 이상)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29 조에 따른 장례식장 연면적 1,000 m²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 조제 4 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000 m² 이상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m² 이상인 시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m²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m² 이상인 시설)